

변경 대비표

1. 해당 투자신탁명 : 우리G 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[채권_재간접형](H)

2. 효력발생일 : 2022.02.11.(금)

3. 변경 사유 :

- 종류 F, 종류 I1, 종류 I2 수익증권 가입자격 금액 변경

▣간이투자설명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-동종유형총보수	2021.05.31 기준	2021.12.31 기준
투자실적추이	2021.06.21 기준	2022.01.14 기준
운용전문인력	2021.06.22 기준	2022.01.14 기준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- I(고액) I1: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50 억 원 - 100 억원인 투자자에 한합니다. I2: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합니다. - F(기관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.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 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따른 기금 다. 100 억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	- I(고액) I1: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10 억 원 이상 30 억원 미만인 투자자에 한합니다. I2: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30 억 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합니다. - F(기관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.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 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따른 기금 다.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

▣투자설명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-동종유형총보수	2021.05.31 기준	2021.12.31 기준
투자실적추이	2021.06.21 기준	2022.01.14 기준
운용전문인력	2021.06.22 기준	2022.01.14 기준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- I(고액)	- I(고액)

	<p>I1: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50 억원 - 100 억원인 투자자에 한합니다.</p> <p>I2: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합니다.</p> <p>- F(기관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.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다. 100 억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</p>	<p>I1: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인 투자자에 한합니다.</p> <p>I2: 투자자의 자격을 투자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합니다.</p> <p>- F(기관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.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다.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</p>
제2부.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연혁추가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운용전문인력	2021.06.22 기준	2022.01.14 기준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▣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 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2021.06.22 기준	2022.01.14 기준
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종류형 구조 - 가입자격	<p>- C(I)1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부터 100 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- C(I)2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- C(F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.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다. 100 억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</p>	<p>- C(I)1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- C(I)2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- C(F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.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다.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</p>
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모자형 구조 [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	펀드규모: 약 6 조 2,414 억원 (2021.05.31 기준)	펀드규모: 5.3 billion USD (약 6.3 조원) (적용환율: 1,193.40 원_2021.11.30 기준)

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개요]		
11.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 가격 적용 기준 가.매입 (2)종류별 가입자격	- Class C(I)1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부터 100 억 미만인 경우 - Class C(I)2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100 억원 이상인 경우 - Class(F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.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따른 기금 다. 100 억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	- Class C(I)1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10 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인 경우 - Class C(I)2: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인 경우 - Class(F): 투자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나.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따른 기금 다.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
13.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동종유형 총보수	2021.05.31 기준	2021.12.31 기준
제4부.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운용자산 규모	2021.06.22 기준	2022.01.14 기준

■규약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3 조 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①~② <생략>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~4. <생략> 5. Class C(I)1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을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투자자로 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6. Class C(I)2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을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투자자로 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7. <생략>	①~② <현행과 동일>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~4. <현행과 동일> 5. Class C(I)1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을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투자자로 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6. Class C(I)2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을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투자자로 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7. <현행과 동일> 8. Class C(F) 수익증권: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

<p>8. Class C(F) 수익증권: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하여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p> <p>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</p> <p>나.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</p> <p>다.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</p> <p>9.~15. <생략></p> <p>④ <생략></p>	<p>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한하여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</p> <p>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</p> <p>나.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</p> <p>다. 투자자의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9.~15. <현행과 동일></p> <p>④ <현행과 동일></p>
--	---